

1. 개정이유

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·보존 의무를 면제하고,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심사제도에 따라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았을 시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(비공개승인)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,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한편,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인용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 작성대상 합리화(안 제89조)

- 1) “20.7.1.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·보존 하는 대상이 확대(공사금액 4천만원이상→2천만원이상)되었으나,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계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소액임에도 미이행 시 처벌이 과도하여 작성대상의 합리화 필요
- 2) 4천만원 미만의 영세·소규모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·보존 의무를 면제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함

나.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 갈음 규정 신설(안 제162조제9항)

- 1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“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심사제도(“21.1.16 시행)“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의 “화학물질

안전정보 영업비밀 심사제도(“21.1.16 시행)이 각 도입되었으나, 심사 대상이 혼합물(화학제품)인 경우 심사내용이 중복됨

- 2) 화평법 상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(비공개 승인)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중복 심사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함

다.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교육 내용 추가(안 별표5)

- 1)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의 사회적 필요성 증대
- 2)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각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

라.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인용조문 정정(안 별표11)

- 1)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된 인용조문을 정정하여 현행화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2020. 11. 13. ~ 12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제2항 중 “그 사용명세서”를 “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사용명세서”로 한다.

제162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를 기재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5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혼합물 단위로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기간까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별표 5 제1호가목 기호(○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
별표 5 제1호나목 기호(○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작업공정의 유해·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 -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
 -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
 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 -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 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 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
 -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
 -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, 강의능력 향상,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
- (※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/3이하에서 할 수 있다.)

별표 5 제1호다목 기호(○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-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
-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
-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
별표 5 제4호가목 교육내용의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.기호(○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.
-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
 -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
 -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 - 산업보건,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 -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 -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
-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
-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
-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
-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
별표 11 제1호 본문 중 “제10호와 제11호”를 “제8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9조(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) ① (생략)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, <u>그 사용명세서를</u> 매월(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종료 시를 말한다)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.	제89조(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사용명세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62조(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) ① ~ ⑧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62조(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를 기재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5조의2에 따라 환

경부장관으로부터 혼합물 단위로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기간까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